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1·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1·2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5. 6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결정(변경)취지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2. 위 치 : 서구 심곡동 245-3번지 일원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 - 나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 - 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 - 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상업시설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연 번	기 정					변 경 (안)				
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비 고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비 고
			위치	면적(㎡)				위치	면적(㎡)	
1	2-16	9,796.1	1	1,207.6	공동개발 (권장)	2-16	9,796.1	1	1,207.6	공동개발 (권장)
			2	641.2				2	641.2	
			3	488.5				3	488.5	
			4	1,455.2				4	1,886.0	
			5	430.8						
			6	1,331.2				6	1,331.2	
			7-1	851.0				7-1	851.0	
			7-2	1,000.7				7-2	1,000.7	
			8-1	390.0				8-1	390.0	
			8-2	749.5				8-2	749.5	
			9	1,250.4				9	1,250.4	

○ 상업시설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2-16	4, 5 → 4	획지합병	건축규모 확장(증축)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(변경) 조서 (변경 없음)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
4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게재 생략)

